

# ‘단톡방’, 밀실보다는 공론장에 가깝다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언제부터인가 ‘단톡방’이 각종 추잡한 사건의 주무대가 되었다. 특정인의 외모에 대한 품평이 오가기도 하고 불법적인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단톡방은 아무 죄가 없다. 다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공유되는 정보가 문제일 뿐이다.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Q** 얼마 전, 홍보담당자들이 모인 단톡방에 개별 기업의 급여 내지 처우 관련 정보가 올라온 적이 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대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화 외에도 단톡방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종류의 대화나 정보 공유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A** 카톡으로 대표되는 단톡방은 매우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정보공유 채널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무려 4,8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유아나 일부 고령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단톡방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이 공간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단톡방은 결코 밀실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 단톡방을 밀실이라 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되는 공간에 가깝다. 단톡방을 이와 같이 이해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공연성’ 관련 우리 판례의 태도를 꼽고 싶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publicity)’은 본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수라도 불특정한 구성원이 인식

할 수 있거나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의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으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소수의 구성원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공연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sup>1</sup>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오픈채팅방은 구성원 숫자와 무관하게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다. 오픈채팅방 멤버들은 특정할 수 없는 구성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정한 멤버로 구성된 일반적인 채팅방은 채팅방의 규모, 다시 말해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전파가능성’ 기준에

**표 | 단톡방 유형에 따른 공연성 인정 여부**

|         | 소수 구성원                     | 다수 구성원 |
|---------|----------------------------|--------|
| 특정 구성원  | △<br>(단,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인정) | ○      |
| 불특정 구성원 | ○                          | ○      |

<sup>1</sup>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의하면, 구성원이 소수라도 문제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단 한 사람과만 나는 1:1 대화조차 그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파가능성’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공연성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A가 B의 직장 동료인 C에게 B의 범죄경력을 알린 사건에서 법원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라며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sup>2</sup>

이 외에도 법원은 ‘사실 확인·규명 과정에서 한 발언’,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당사자 공방 중에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3</sup>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단톡방은 밀실이 아니며,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정보 교환은 공공연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톡방을 공론장에 가까운 것으로 여긴다면 거기서 나눌 대화의 종류나 공유할 정보의 성격 또한 명확해진다.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당하게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러 기업의 급여 수준, 직원 처우, 언론사라면 취재비 수준 등은 모두 공유할 만한 공적인 성격의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의 공익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나 사

회 구성원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까지도 판례는 공적인 것으로 본다. 일례로, 고교 동창 10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D가 E라는 동창에 대해 “E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톱을 올렸지만 법원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등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E로 인하여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초하여 E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 D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sup>4</sup>

또, 모 대학 총학생회장 F가 같은 대학 사범대 학생회장 G의 음주운전 사실을 공론화하며 총학생회 단톡방에 ‘총학생회장으로서 G의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F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sup>5</sup>

디지털 세상의 특징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단톡방은 밀실보다는 공론장에 훨씬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할 것만 가려서 올려야 한다. ㉞

2 울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정797 판결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ziro01@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